원 주 시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2026년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이수결과 제출 요청(수정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제3항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제5항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 제7항,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6제5항, 「자살예방법」 제17조제1항,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, **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**하고, 그 결과를 **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3. 이에 따라, **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**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각 의료기관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고,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교육 안내

구분	교육대상	교육사이트
아동학대 신고의무자	의료기관의 장, 의료인, 의료기사, 응급구조사,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모든 종사자	- 경기도평생학습포털(www.gseek.kr) - 서울시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*주의)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님	의료기관의 장, 의료인, 의료기사, 응급구조사, **간호조무사**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모든 종사자	- 나라배움터(e-learning.nhi.go.kr) - 경기도평생학습포털(www.gseek.kr) - 서울시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
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	의료기관의 장,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	- 경기도평생학습포털(www.gseek.kr) - 한국보건복지인재원(in.kohi.or.kr)
노인학대 신고의무자	**요양병원, 종합병원만 해당** 의료기관의 장, 의료인, 의료기사	- 경기도평생학습포털(www.gseek.kr) - 서울시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
자살예방교육	**병원급 의료기관만 해당** 의료기관의 장,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	-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(https://edu.kfsp.or.kr/)

* 그 외 추가 교육사이트, 강의자료는 개별 안내문에서 확인

※ 의료인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조산사
※ 의료기사: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

나. 제출안내

1) 제출서류
- 각 교육 결과보고서(붙임서식)
- 증빙서류
  · (온라인교육 시) 수료증 첨부
  · (집합교육 시) 현장교육 사진, 참석자 서명부 첨부

※ 단, 자살예방교육 실시 결과보고는 교육 누리집(https://edu.kfsp.or.kr)에 직접 입력, 보건소에 제출 불필요함.

2) 제출기한: **2026. 12. 18. 까지**

3) 제출처: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공의료팀 **팩스** 또는 **이메일** 제출

구분	담당자 전화번호	담당자 이메일주소	보건소 팩스번호
일반병원, 일반의원	033-737-4022	cyg1208@korea.kr	033-737-4826
치과, 한방 병의원	033-737-4003	ea0506@korea.kr	

붙임 1. 교육 결과보고서(서식) 각 1부.
2. 교육 안내문 각 1부.

※ 첨부파일: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>건강정보>정보마당>"신고의무자" 검색 다운가능. 끝.

원 주 시 장

수신자 원주시의사회장 귀하, 원주시치과의사회장 귀하, 원주시한의사회장 귀하,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,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장,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466개소 귀하,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33개소 귀하

주무관 **최윤경** 공공의료팀장 **이은남** 보건행정과장 전결 2026. 9. 1. **김스젠**

협조자

시행 보건행정과-22684 (2026. 9. 1.) 접수

우 264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139, (일산동, 원주시보건소) (일산동) / http://www.wonju.go.kr

전화번호 033-737-4022 팩스번호 033-737-4826 / cyg1208@korea.kr / 비공개(5,6)

개인정보 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